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이용계약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소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계약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 “갑” 과 서비스 이용자 “을” 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을”의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이용료 및 비용변경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이용료 본인부담금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①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등으로 교부한다.
 - ②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 ③ 미납 통보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별표 1- 제12조 관련>

시설 입소 비용

입소 보증금 - 없음

입소 비용 : 2025년도 기준 (30일 기준)

구 분	급 여 비 용					비급여 부담금		본인부담금 총 액
	급여합계	1일수가	일수	공단부담	본인부담(A)	고정 비급여(B)		
				80%	20%	식재료비	구성	A+B
1등급		86,030	30	2,064,720	516,180	282,000	1식 2,800원 간식 1일 2회 1,000원	798,180
2등급		79,810	30	1,915,440	478,860			760,860
3등급		75,360	30	1,808,640	452,160			734,160
의료급여 수급권자 감경 (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8%)				1등급	206,470			488,470
				2등급	191,540			473,540
				3등급	180,860			462,860
기초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					면제			생계비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비급여 항목 비용

항 목	내 용	금 액	비 고
식 재료비	1식 2,800원*3식	1일 8,400원	
간식비	1회 500원*2회	1일 1,000원	
진료,약제비	외래 진료 및 약제비 비급여액	실 비	
이 미용	외부, 방문 이미용	무료	
요청 물품	보호자, 또는 요청에 의한 물품	실 비	